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71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김미애 · 이인선 · 김은혜
서명옥 · 김태규 · 엄태영
한지아 · 백종현 · 이종욱
안상훈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면제,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지방세 면세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유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까지</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② ----- ----- <u>2029년 12월 31일까지</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	③ ----- ----- -----

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
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
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
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
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

④ · ⑤ (생략)